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청본관 3층) 담당 김철수


문서번호 법무11010-522

시행일자 1997. 3. 7. (수)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 | | | |
|---------|-----|---|----|
| 취급 | | 시 | 장 |
| 보존 | |  | |
| 기획관리실장 | 전결 | | |
| 법무 담당관 | 홍 | | |
| 법 제 계 장 | 김 | | |
| 기안 | 김철수 | | 협조 |

제목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복무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 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각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훈령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7. 3. 15(토).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0호.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폐기물관리과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가. 발령예정일 : 1997. 3. 15(토)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0호(생략). 끝.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7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

1. 개정이유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강요·수수하거나, 별도의 옷돈요구, 고의적인 수거 지연 등으로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복무기강 쇄신대책의 일환으로 금품수수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기적인(연속2월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1회적발시 정직5일, 2회적발시 해고토록 함.

나. 금품을 수수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행위(도급행위)에 대해 년 단위로 경고(1회)~해고(5회)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정직5일(1회)~해고(2회)토록 강화함.

다.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월 단위로 주의(1회적발)~해고(6회)토록 되어 있는 것을 경고(1회)~해고(4회)로 강화 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환경미화원징계처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

| 구분 | 위반사항 | 처분기준 | | | | | | | | |
|--------------|---|------|----|----|----|----|----|----|----|----|
| | | 주의 | 경고 | 정직 | | | | | 해고 | |
| | | |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 |
| 발생시 |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화징자 | | | | | | | | | 1회 |
| | 무고한 부서 등 충화를 해하는자 | | | | | | | | | 1회 |
| | 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 | | | | | | | | | 1회 |
| 월단위 | 지참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6회 |
| | 지시사항 불이행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6회 |
| | 담당구역 청소불량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6회 |
| |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 | 1회 | 2회 | | 3회 | | | | 4회 |
| | 품위 손상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6회 |
| | 장비관리 불철저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6회 |
| | 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누적) | | 1회 | 2회 | 3회 | 4회 | | | | 5회 |
| | 무계결근 | | 1회 | 2회 | 3회 | 4회 | | | | 5회 |
| | 복장위반 | | 1회 | 2회 | 3회 | 4회 | | | | 5회 |
| |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외무 불이행 | | 1회 | 2회 | 3회 | 4회 | | | | 5회 |
| | 근무중 음주행위 | | | 1회 | 2회 | 3회 | | | | 4회 |
| 년단위 | 근무태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6회 |
| | 근무지 무단이탈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6회 |
| |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 | 1회 | 2회 | 3회 | 4회 | | | | 5회 |
| | 도급행위 | | | | | | | 1회 | | 2회 |
| | 금품요구행위 | | | | 1회 | 2회 | | | | 3회 |
| | 근무중 주민등에게 행패 | | | 1회 | 2회 | 3회 | | | | 4회 |
| | 폐기물 소각행위 | | | 1회 | 2회 | 3회 | | | | 4회 |
| |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 | | 1회 | 2회 | 3회 | | | | 4회 |
| |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자 | | | | 1회 | 2회 | | | | 3회 |
| |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하는 행위 | | | | | | | | 1회 | 2회 |
| | 자기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 | | | | 1회 | | | | 2회 |
| 정기적인 금품요구 행위 | | | | | | | | 1회 | 2회 | |
| 처분의 기준 | 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주의처분 년 16회이상 : 해고 나.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라.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주의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경고 1회,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사용 력을 기준으로 한다. 4. "정기적"이라함은 연속2월이상을 말한다. | | | | | | | | | |

서울특별시

우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 전화 (02) 757-6248 / 전송 757-6240
 처리부서 : 폐기물관리과(을지로별관4층) 담당 김재환

문서번호 폐관67510 - 200

시행일자 1997. 3. 5 (년)

(경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 | | | | | |
|-------------|----------|-----|------------------|--|-----|
| 선 결 | 3 | | 지 시 | | |
| 접 수 | 일자 시간 | | 결 재 공 람 | | 301 |
| | 번호 | 900 | | | |
| 처 리 과 | | | | | |
| 담 당 자 | | | | | |

제 목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발령 의뢰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발령을 의뢰 하오니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환경미화원 복무기강 쇄신대책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안 5부. 끝.

김재환

폐기물관리과장

감사공무원복무수칙

서울특별시 감사실소속 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공무원의 복무자세(서약의무, 업무수행, 자질
향상), 감사활동(감사실시 기준, 감사준비, 감사
책임, 서약서제출 등), 생활자세(품위유지, 생활
및 행동기준)등을 규정한 감사공무원복무수칙을
제정함.